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4. 5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년 4월 5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이 명 성

가. 개정이유

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 내용

- (1) 안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, 대규모점포, 대형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, 상생발전 전통시장 등 용어의 뜻을 정의
- (2) 안 제3조에서는 구의 책무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시행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
- (3) 안 제5조에서 유통사업자의 책무로서 관내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
- (4)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 수립하도록 함
- (5)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운영, 대상 업무 및 예산 지원 사항 등을 규정
- (6)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 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·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기업상생발전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지정·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각호에 대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

- (7) 안 제13조에서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명시
- (8)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전통 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할 경우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적합할 경우 협의회 협의 거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, 기한, 철회유보,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.
- (9) 안 제16조에서 전통시장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, 경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(10) 안 부칙 제2조에서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부칙 제2조의 일몰 규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부분,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규정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○ 동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(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) 및 제13조의 3(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)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로부터 「표준 조례안」이 시달되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,

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「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 대형유통기업의 변칙적인 영업구역의 확장이나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탈법적인 영업행위로부터 전통시장,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고 상생협력하기 위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계층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인원수를 늘려 폭넓은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어 실질적인 협의회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

- 4. **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- 5. **토론요지 : 없음**
- 6. **심사결과 : 수정가결**
- 7. **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- 8. **기타사항 : 없음**